

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15일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3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6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1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3. 12. 4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정명숙 배터리첨단산업과장)

가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포항시 배터리첨단산업과 관련사무 중 「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」을 (재)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함.

나. 제안이유

- 포항시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

○ 위탁사무의 내용

- 사업기간 : 2024년 ~ 2026년 (3년)

- 추진배경 : 전통산업 분야의 중소·중견기업들에 대한 패키지형 기술지원과기술자
립화 확립지원을 통한 이차전지 사업 참여 촉진 및 신성장동력 확보

- 총사업비 : 1,200백만원(시비) / 400백만원 * 3년(2024 ~ 2026년)
- 사업내용
 - 지원대상 : 포항지역 중소기업으로 이차전지 업종 전환 희망 기업
 - 지원내용 : 시제품 설계 및 제작, 기업 애로사항 해결, 컨설팅 지원 (사업전략, 재무전략) 등
- 기대효과
 -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기업체의 기술역량 확보 및 경쟁력 향상
 - 지역 중소기업의 이차전지산업 전환 지원을 통한 포항의 신성장 동력 확보
- 위탁 기간 : 2024년 ~ 2026년 (3년)
- 적정성 검토 결과

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						
연번	검토항목	내 용				
1	다른 사무방식 수행가능성		공공기관 위탁·대행	직접수행	민간위탁	용역
		수행능력	상 기업지원사업 수행경험有→ 정책이해도 高	하 전문인력 부족	중 검증된 전문기관 부재	중 전문성미흡→ 단순사무업무 대행위주
		비용절감 효과	상 기존 전문인력 활용가능	하 인력충원필요	하 수요조사인한 비용증가 가능성 있음	하 비전문인력 낮은 신빙성으로 투자 대비 실적미비
		효율성	상 기업지원사업 유관기관으로 좁혀서사업수행능	하 조직확대필요	하 이윤추구로 공익성저해 리스크있음	하 공공성 無, 전반적인 사업 관리 어려움
		관리기능	상 유기적 협업가능	상 직접관리	하 관리권한 한계	하
		비교순위	1	2	3	4
		2	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- (재)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‘공공기관’ 에 해당 - (재)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소재에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속 소재 산업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하며 오랜기간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사항 해결 및 기술 혁신을 선도하였음. 또한 중소기업 실용화 연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경험이 축적됨		

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

연번	검토항목	내 용
3	경제적 효율성	- (재)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과제관리 가능 (온라인 신청·접수, 성과관리 등) - 자체 전문인력 투입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 가능
4	수탁·대행기관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	- (재)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포항시 출연기관으로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 지원이 가능하고 다수의 전문인력 및 기술사업화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 전문지식과 연구수행 능력이 탁월해 기술활용이 가능함
5	성과 측정 용이성	- 사업계획, 목표 대비 추진실적 산출 및 수혜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함 -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, 정산, 결과보고 및 사업수행 결과물 등을 통해 성과측정 가능함
6	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-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협약 후 협약서 및 세출집행기준 등에 의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가능
7	책임행정의 보장성	- 포항시 출연기관으로의 대외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,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행정 보장

■ 검토 결과

-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)에 의거
-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(재)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지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기업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.

3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의회 동의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재각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 따라 “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”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의회의 동의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사무 위탁의 법적근거,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소관부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전통산업에서 이차전지 산업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을 이루어 가시적인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